

의안번호	제 22 호
의결년월일	1998.

의결사항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8. 8. 2/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✓✓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'98. 8. 4.
제출자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·인력 감축으로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본청의 행정기구중 기능쇠퇴, 유사·중복기능 등을 통폐합하고 기존의 국 및 실·과의 명칭을 기능에 부합되고 시민이 알기쉽게 변경하는 것임.

2. 법적근거

-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 [도 행정 12200-10406('98. 6. 22)]

3. 주요골자

가. 본청 국·과개편 현황(4국 26과 ⇒ 2국 17과)

구 분	통 폐 합	기능조정	명칭변경	비 고
계	11	5	10	
국	2		2	
실·과	9	5	8	

- 실 : 3실(12담당)
 -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해양수산실
- 행정관리국 : 6과(26담당)
 - 행정과, 세무과, 회계과, 사회과, 시민정보과, 환경보호과

○ 지역개발국 : 8과(34담당)

- 지역경제과, 건설과, 도시과, 교통관광과, 지적과, 수도과, 하수과, 녹지과

나. 국단위 개편

○ 통·폐합 - 2국

- 총무국 + 사회환경국 = 행정관리국

- 산업경제국(지역경제, 기업지원, 산림녹지과 흡수) + 건설도시국
= 지역개발국

다. 과단위 개편

(1) 통폐합 - 9과

① 기획담당관실 + 감사담당관실 ⇒ 기획감사실

② 총무과 + 민방위과 + 건설과 ⇒ 행정과, 건설과

③ 시민과 + 정보통신과 ⇒ 시민정보과

④ 사회복지과 + 사회봉사과 ⇒ 사회과

⑤ 위생과 + 보건소 ⇒ 보건소

⑥ 환경보호과 + 청소과 ⇒ 환경보호과

⑦ 지역경제과 + 기업지원과 ⇒ 지역경제과

⑧ 농정과 + 농촌지도소 = 농촌지도소

⑨ 도시과 + 주택과 = 도시과

(2) 기능조정 - 13과

《이관》 - 5과

○ 사회과(사회복지과+사회봉사과) : 사회환경국 ⇒ 행정관리국

○ 환경보호과(환경보호과+청소과) : 사회환경국 ⇒ 행정관리국

○ 지역경제과(지역경제과+기업지원과) : 산업경제국 ⇒ 지역개발국

○ 농 정 과 : 산업경제국 ⇒ 농촌지도소

○ 산림녹지과 : 산업경제국 ⇒ 지역개발국

《명칭변경》 - 8과

- 기획담당관실 ⇒ 기획감사실(기획담당관실 + 감사담당관실)
- 문화공보담당관실 ⇒ 문화공보실
- 수산담당관실 ⇒ 해양수산실
- 총무과 ⇒ 행정과(총무과 +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)
- 시민과 ⇒ 시민정보과(시민과 + 정보통신과)
- 사회복지과 ⇒ 사회과(사회복지과 + 사회봉사과)
- 교통행정과 ⇒ 교통관광과(교통행정과 + 도시과 관광진흥계)
- 산림녹지과 ⇒ 녹지과

라. 유사·중복업무 조정

- 총무과의 업무중 제안업무는 기획감사실로,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 관리업무, 취학아동 관리 업무는 시민정보과로 이관함
- 회계과의 업무중 공무원 보수, 급여여 업무는 행정과로 이관함.
- 사회복지과의 유료직업안내소 지도·감독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함
- 건설과의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업무중 연안에 관계되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업무는 해양수산실로 이관함.
- 폐지되는 사회봉사과의 업무중 소규모 지역개발업무는 건설과로, 광고 물 허가·신고·단속 및 지도·감독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함.
- 도시과의 관광업무는 교통관광과로 이관함.
- 폐지되는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업무는 본청 하수과로 이관함.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에 두는 부시장과 국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시장) ①사천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.
②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2. 소속공무원의 지도·감독

제3조(국의 설치) ①시본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, 지역개발국을 둔다.

제4조(행정관리국) ①행정관리국에 행정과, 세무과, 회계과, 사회과, 시민정보과, 환경보호과를 둔다.

②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정행사,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2. 지방세 부과, 징수에 관한 사항
3. 국·도비,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(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제외)에 관한 사항
4.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
5. 주민등록, 호적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
6.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
제5조(지역개발국) ①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, 건설과, 도시과, 교통관광과, 지적과, 수도과, 하수과, 녹지과를 둔다.

②지역개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
2. 지역개발 및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
3.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
5. 교통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
6. 지적공부 정리 및 개별 필지의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
7.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8.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항
9. 도시녹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
제6조(실·과의 분장사무) 실 및 과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국·담당관·과의 명칭은 당해 조례·규칙의 개정시까지 이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른 국·실·과로 본다.